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함께 하는 복지사회구현의 시정목표를 달성코자 함.

□ 주요골자

-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을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함 (안 제2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어민등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정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현행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 등 대학”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동 조례가 개정되면 파주시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진학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학비부담 해소를 통해 가정경제생활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수 있고, 아울러 시민

복지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단체 스스로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내용상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교 학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1조(목적) 내용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에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교 학생”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너무 나열식의 조문이 되므로 제1조(목적)중에서 “중·고등학교”를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개정해야 할 것임.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1998.3.10 조례 제89호] <전면개정 2000. 1.22 조례 제310호/개정 2000. 6.12 조례 제333호/ 2000.12.14 조례 제371호>	
현 행	개 정(수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u>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u>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지급하는</u>----- ----- ----- -----.
제2조(장학금의지급대상)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u>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u> 2. <u>영세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u> 3. <u>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u>	제2조(장학금의지급대상)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u>국민기초수급권자·영세농민·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u> 2. <u>국민기초수급권자·영세농어민·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u> 다만,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3. (삭제)